

## 2023년 상반기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결과 공개

[2023년 연수구 청림공모전 당선작]

도사기세요 청림 털어내세요 무박

연 수 구  
감 사 실

# 2023년 상반기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결과

## I

### 감사개요

감사근거

-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
-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(자체감사의 종류)
- 「인천광역시연수구 자체감사규칙」 제5조(감사의 종류 및 실시 주기)
- 2023년 자체감사 및 감찰 계획 [감사실-60(2023.1.3.)]

감사형태 : 실지감사(일반행정 감사 및 주민공개감사 병행 실시)

감사장 : 각 동 행정복지센터 내 감사장

감사반원 : 1개반 5명

감사기간 및 대상 범위

| 대상기관 | 감사기간   | 감사대상 범위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연수3동 | 2023. 06. 05.(월) ~ 06.09.(금)<br>※ 6.6.(화) 현충일 제외 | 2020. 5월 ~ 2023. 3월 추진업무 전반 |
| 동춘3동 | 2023. 05 .22.(월) ~ 05. 25.(목)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송도1동 | 2023. 05. 30.(화) ~ 06. 02..(금)                   | 2020. 6월 ~ 2023. 3월 추진업무 전반 |

중점감사 사항

- 예산·회계 집행 사항(공사 및 계약 포함)
- 주민등록 및 인감 관리 사항
- 청소년증 (재)발급 및 장애인 관련 업무 등 사회복지 업무
- 복무, 민방위, 물품관리 및 동 청사 보안관리 등

## II

## 지적사항

|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|---|
| 제목             | <b>1.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사항</b>   |
| 위법<br>부당<br>내용 |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, 준공 처리 시 지출증빙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정산 처리하지 않음  |
| 처분<br>요구<br>사항 |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사용기준」 등을 준수하고, 지출내역이 증빙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회수하도록 <b>‘시정 요구’</b> 조치   |
| 제목             | <b>2. 공사 환경보전비에 관한 사항</b>   |
| 위법<br>부당<br>내용 | 환경보전비 적용 대상 공사임에도 비용을 계상하지 않고 환경보전비를 계상한 건에 대해서도 착공 시 환경보전비에 대한 사용계획서 및 준공 시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(사진, 거래명서, 세금 계산서 등) 없이 준공 처리함  |
| 처분<br>요구<br>사항 |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및 같은법 시행규칙, 「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」 등을 준수하도록 <b>‘주의 요구’</b> 조치하고, 지출 증빙이 되지 않은 환경보전비를 회수하도록 <b>‘시정 요구’</b> 조치   |
| 제목             | <b>3. 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사항</b>  |
| 위법<br>부당<br>내용 |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하고,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나,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공사 하자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  |
| 처분<br>요구<br>사항 |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을 준수하여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<b>‘주의 요구’</b> 조치   |
| 제목             | <b>4. 계약 관련 서류 관리에 관한 사항</b>  |
| 위법<br>부당<br>내용 |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계약 시 계약의 목적, 계약금액, 이행기간, 계약보증금 등의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고,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완료한 때는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자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준공신고서(준공계)를 수령 및 보관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|
| 처분<br>요구<br>사항 |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을 준수하여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<b>‘주의 요구’</b> 조치   |

|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|--|
| 제목             | <b>5. 계약 대가지급에 관한 사항</b>   |
| 위법<br>부당<br>내용 | 계약 대가 지급 시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라 「지방계약법」상의 모든 계약은 납부사실 증명 대상이나 국민·건강 완납증명서 확인을 소홀히 하고, 공사 준공 시 하자보증이행 각서를 징구하지 않고 준공 처리 및 대가를 지급함  |
| 처분<br>요구<br>사항 |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및 「국민연금법」 등을 준수하여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<b>‘주의 요구’</b> 조치  |
| 제목             | <b>6.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</b>  |
| 위법<br>부당<br>내용 | 소속 상근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명절 선물을 구입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, 지급 대상이 아닌 동 주민자치센터 자원활동가 등에 지급함  |
| 처분<br>요구<br>사항 |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「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」 등을 준수하고, 미지급 대상에 지급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회수하도록 <b>‘시정 요구’</b> 조치   |
| 제목             | <b>7. 세출예산 집행 사전 품의에 관한 사항</b>   |
| 위법<br>부당<br>내용 | 신용카드 사용 시 회계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,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(품의)을 한 후 신용카드 사용으로 지출을 결정(원인행위)을 하여야 하나,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에 편성된 사업목적에 따라 사전 집행 품의 없이 신용카드 사용함 |
| 처분<br>요구<br>사항 |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「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 등을 준수하여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<b>‘주의 요구’</b> 조치함   |
| 제목             | <b>8.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</b>  |
| 위법<br>부당<br>내용 |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의 [별표 4]‘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 기준’에 따라 지출원이 해당기관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 |
| 처분<br>요구<br>사항 |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구매카드(신용카드) 발급대장 작성 및 비치하도록 <b>‘시정 요구’</b> 조치   |
| 제목             | <b>9. 강사비 지출 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</b>  |
| 위법<br>부당<br>내용 | 강사비 지출 시 구비하는 강의확인서 및 이력서를 징구하면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동의를 받지 않음   |
| 처분<br>요구<br>사항 |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등을 준수하여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<b>‘주의 요구’</b> 조치  |

|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|--|
| 제목             | <b>10.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</b>  |
| 위법<br>부당<br>내용 | 「주민등록법」, 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 및 「2022 주민등록 사무편람」 등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자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에 맞지 않게 부과함  |
| 처분<br>요구<br>사항 |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하고, 잘못 부과된 과태료를 환급하도록 <b>‘시정 요구’</b> 조치  |
| 제목             | <b>11.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</b>  |
| 위법<br>부당<br>내용 | 업무 수행과정에서 생산, 접수되는 각종 기록물은 업무단위로 편철 관리되어야 하나, 출생(사망)신고서, 정정신고서 및 인감관리대장 등의 편철 및 관리를 소홀히 함  |
| 처분<br>요구<br>사항 |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「공공기록물법」 등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<b>‘주의 요구’</b> 조치  |
| 제목             | <b>12. 주민등록 재등록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</b>  |
| 위법<br>부당<br>내용 |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해 최고 또는 공고되지 아니한 자의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, 고지서 작성 시 과태료 금액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부과함   |
| 처분<br>요구<br>사항 |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 및 「질서행위규제법」 등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하고, 덜 부과된 재등록 과태료를 추징하도록 <b>‘시정 요구’</b> 조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목             | <b>13.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</b>  |
| 위법<br>부당<br>내용 |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사유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(보안기능 추가 및 성명 변경 등) 또는 부과(분실 등)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, 수수료 부과금액을 잘못 부과함   |
| 처분<br>요구<br>사항 |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 및 「주민등록 사무편람」 등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하고, 부과하지 않은 수수료를 추징하고 잘못 처리된 수입증지에 대한 수입금 재정산을 통해 환급 및 추징하도록 <b>‘시정 요구’</b> 조치 |
| 제목             | <b>14. 수입증지 수입금 정산(일일결산)에 관한 사항</b>  |
| 위법<br>부당<br>내용 | 「인천광역시 연수구 수입증지 조례」에 따라 수입증지 수입금과 관련하여 결손 누락 및 착오 입력 등으로 일일결산 및 증지발행관리대장 상 결손내역과 첨부된 결손 증빙서류 불일치로 수입증지 수입금액 일부 과납 또는 미납함                   |
| 처분<br>요구<br>사항 |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「주민등록법」 및 「인천광역시 연수구 수입증지 조례」를 준수하여 업무 처리하도록 <b>‘주의 요구’</b> 조치하고, 수입증지 수입금액 과납분 및 미납분에 대해 환급 및 추징하도록 <b>‘시정 요구’</b> 조치 |

|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|--|
| 제목             | <b>15. 통장 모집 및 해촉 등에 관하 사항</b>   |
| 위법<br>부당<br>내용 | 통장 해촉일자에 대한 착오로 임기 만료된 통장의 월정수당을 과다 지급하고, 임기만료일을 앞둔 통장을 공개모집 시 해촉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공개모집을 실시하고, 공고 기간에 초일을 산입하여 공고함 |
| 처분<br>요구<br>사항 |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「행정기본법」 및 「인천광역시 연수구 통·반 설치 조례」 등을 준수하여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<b>‘주의 요구’</b> 조치                    |
| 제목             | <b>16. 통장 면접심사 운영에 관한 사항</b>   |
| 위법<br>부당<br>내용 | 통장 면접전형 심사기준표의 질문 사항을 객관적인 면접심사가 불가능한 항목으로 정하고, 심사 기준표상 정해진 배점기준이 아닌 다른 점수를 부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처분<br>요구<br>사항 |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「인천광역시 연수구 통·반 설치 조례」 및 「공정채용 표준안」 등을 준수하여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<b>‘주의 요구’</b> 조치                 |
| 제목             | <b>17.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에 관한 사항</b>  |
| 위법<br>부당<br>내용 | 「민방위기본법」에 따라 ‘형 집행’자는 교육훈련 면제 처리를 하여야 하나 당연 제외 처리를 하였으며, 결재를 받지 않고 담당자 임의 처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처분<br>요구<br>사항 | 「민방위기본법」 및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등을 준수하여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<b>‘주의 요구’</b> 조치  |
| 제목             | <b>18. 의사무능력(미약)자 급여관리 점검에 관한 사항</b>   |
| 위법<br>부당<br>내용 | ‘2020년 상반기 의사무능력(미약)자’에 대한 급여관리 점검 시 증빙자료가 미비하여 점검표상 ‘미흡’ 판정을 한 후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처분<br>요구<br>사항 | 「장애인복지법」 및 「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」 등을 준수하여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<b>‘주의 요구’</b> 조치  |
| 제목             | <b>19. 청소년증 (재)발급 신청 및 교부에 관한 사항</b>   |
| 위법<br>부당<br>내용 | 청소년증 대리 신청 시 구비서류 일부를 제출받지 않고,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청소년증 (재)발급 신청시 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’를 제출받지 않음                       |
| 처분<br>요구<br>사항 |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및 「청소년사업 안내」 등을 준수하여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<b>‘주의 요구’</b> 조치   |

|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|---|
| 제목             | <b>20. 장애인등록증 등 (재)발급 신청 및 교부에 관한 사항</b>  |
| 위법<br>부당<br>내용 | 장애인등록증 재발급에 따른 회수증을 폐기하지 않거나 증 회수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며, 장애인등록증 교부 시 교부 내역을 기재하지 않아 수령자 및 수령 여부 확인 불가함   |
| 처분<br>요구<br>사항 |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및 「청소년사업 안내」 등을 준수하여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<b>‘주의 요구’</b> 조치  |
| 제목             | <b>21. 장애인 자동차표지 관리 소홀</b>  |
| 위법<br>부당<br>내용 | 장애인 자동차 표지 재발급 시 기존 자동차 표지 회수 여부가 불명확하고, 회수 표지판을 파괴하지 않았으며, 대여 및 리스 차량에 대해 행복 e음 상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는 등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소홀                     |
| 처분<br>요구<br>사항 |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, 「자동차관리법」 및 「장애인복지 사업안내」 등을 준수하여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<b>‘주의 요구’</b> 조치  |
| 제목             | <b>22. 장애인 재판정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</b>  |
| 위법<br>부당<br>내용 | 장애인등록 재진단(판정) 시기가 도래한 대상자에 재판정 안내에 대한 통지기한을 지연 안내하였으며, 재진단 기한일 1개월 전에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대상자에 재판정 촉구 통지 기한을 지체하여 안내함                       |
| 처분<br>요구<br>사항 |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및 「장애인복지 사업안내」 등을 준수하여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<b>‘주의 요구’</b> 조치  |
| 제목             | <b>23. 출장여비에 관한 사항</b>  |
| 위법<br>부당<br>내용 | 출장여비 지급 시 2km 이내 근거리에 위치한 복수의 출장지를 경유함으로써 2km 이상 출장지를 다닌 것으로 기재하였으나, 출장지의 공무수행 내역이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 출장여비를 지급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처분<br>요구<br>사항 | 「공무원 여비규정」에 따라 적정 여비가 지급되도록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, 부당하게 지급된 출장여비 및 가산금을 회수하도록 <b>‘시정 요구’</b> 조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목             | <b>24. 동 청사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</b>   |
| 위법<br>부당<br>내용 | 「동 주민센터 당직 근무 개선 계획」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가 자체 청사 보안계획을 수립하여 지정된 일일 보안담당자로 하여금 보안점검 시간에 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, 일일보안담당자 근무명령부와 보안점검일지 상의 보안점검자가 상이함 |
| 처분<br>요구<br>사항 | 구의 「동 주민센터 당직 근무 개선 계획」 및 「동 자체 청사보안계획」 등을 준수하여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<b>‘주의 요구’</b> 조치   |